

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개정(안)(국문)

(외부의견조회)



선체규칙개발팀

개정 배경 및 내용

(1) 개정 배경

- 1) IACS 에서 UR Z15 (Rev.4)가 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
 -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과 유사한 해양구조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
 - 보일러 검사는 관련 UR 내용 참조하도록 수정.

(2) 개정 내용 : 신규 대조표 참조

(3) 적용 일자 : 2026년 7월 1일 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 <생략></p> <p>101. <생략></p> <p>102. 용어의 정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략></p> <p>2. 선하중탱크(preload tank)</p> <p>선하중탱크라 함은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선체에 있는 탱크를 말한다. 이들 탱크는 정기적으로 해수평형수가 채워지고 굴착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조물의 푸팅에 선하중을 가하는데 사용된다. 선하중탱크는 평형수탱크와 동등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략></p> <p>303. 정기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략></p> <p>4. 제1차 정기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략></p> <p>(3) 기타장치</p> <p>(다) 특수장치 (모든 형식)</p> <p>(e) 관장치</p> <p>굴착작업에만 사용하고 우리 선급의 요건 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에 적합한 관장치는 실행 가능한 경우 사용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이하 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 <현행과 동일></p> <p>101. <현행과 동일></p> <p>102. 용어의 정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 <p>2. 선하중탱크(preload tank)</p> <p>선하중탱크라 함은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선체에 있는 탱크를 말한다. 이들 탱크는 정기적으로 해수평형수가 채워지고 굴착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조물의 푸팅에 선하중을 가하는데 사용된다. 선하중탱크는 평형수탱크와 동등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 (2026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 <p>303. 정기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 <p>4. 제1차 정기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 <p>(3) 기타장치</p> <p>(다) 특수장치 (모든 형식)</p> <p>(e) 관장치</p> <p>굴착작업에만 사용하고 우리 선급의 요건 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에 적합한 고압 관장치는 실행 가능한 경우 사용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동일></p>	<p>- 굴착 용어 삭제 UR Z15 (Rev.4) 내용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06. 보일러검사</p> <p>1. 검사시기</p> <p>(1) 수관식 주보일러</p> <p>(가) 2개 이상의 보일러를 가진 구조물의 경우, 2.5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.</p> <p>(나) 1개의 보일러를 가진 구조물의 경우, 제조 후 7.5년까지는 2.5년마다 검사하여야 하며 7.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전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.</p> <p>(2) 폐열보일러 등의 보조보일러는 2.5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2. 검사시기의 연기</p> <p>보일러검사의 연기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. 다만,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.</p> <p>3. 검사사항</p> <p>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8절 802.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306. 보일러검사</p> <p>1. 검사시기</p> <p>(1) 수관식 주보일러</p> <p>(가) 2개 이상의 보일러를 가진 구조물의 경우, 2.5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.</p> <p>(나) 1개의 보일러를 가진 구조물의 경우, 제조 후 7.5년까지는 2.5년마다 검사하여야 하며 7.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전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.</p> <p>(2) 폐열보일러 등의 보조보일러는 2.5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8절 801.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검사시기의 연기</p> <p>보일러검사의 연기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. 다만,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.</p> <p>3. 2. 검사사항</p> <p>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8절 802.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- 보일러 검사는 관련 UR 내용(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8절)참조하도록 수정.</p> <p>: UR Z15 (Rev.4) 내용 반영</p>